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575

제안연월일 : 2022. 12. .

제 안 자: 박선미 의원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의 출산장려금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지원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조례안의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춰 정의 수정, 불필요한 정의 삭제(안 제2조)
-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 부 또는 모가 전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안 제4조제2항)
- 부모가 아닌 자의 범위 한정(안 제4조제3항)
- 3. 수정조례안 : 덧붙임
-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덧붙임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미만"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전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제3항 중 "사망, 이혼, 직업 등"을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자와"를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과"로 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개정안과
「모자보건법」제3조		같음)
및「저출산·고령사		
회기본법」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		
강을 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	<u>장려</u> 분	
회문제에 적극 대처	위기를 조성하고자 -	
하고 출산 <u>장려분위</u>		
<u>기를 조성하고자</u> 첫		
째아이 이상 출산가		
정에 대한 출산장려		
금을 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제2조(정의) (현행과 같	제2조(정의)
서 사용하는 용어의	승)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1.(현행과 같음)	1
출생 후 28일 <u>미만</u>		<u>이내</u>
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	2. (현행과 같음)	<u> <삭 제></u>
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기준) 출산장	제3조(지원기준) ① 하	제3조(지원기준) ① (개
려금은 예산의 범위	남시장(이하 "시	정안과 같음)
안에서 첫째아이는 3	장"이라 한다)은 예	
0만원, 둘째아이는 50	산의 범위에서 다음	
<u>만원, 셋째아이는 100</u>	과 같이 출산장려금	
<u>만원, 넷째아이는 200</u>	을 지원한다.	
만원, 다섯째아이 이	1. 첫째 자녀 50만원	
<u>상은 300만원을 지원</u>	2. 둘째 자녀 100만원	
한다. 다만, 출생아가	3. 셋째 자녀 2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4. 넷째 자녀 1,000만	
에는 태어난 순위에	원(매년 250만원씩	
따라 지원한다	4년간 분할지급)	
	5.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매년 500	
	만원씩 4년간 분할	
	<u>지급)</u>	
<u>〈신 설〉</u>	② 출생아가 다태아	② (개정안과 같음)
	(쌍둥이) 이상인 경우	
	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	
	<u>원한다.</u>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 ① (생략)
- 주자인 경우에는 신 생아의 출생일부터 6 개월이 경과한 날까 경우 지원대상이 된 다.
- ③ 신생아가 부모의 | 사망, 이혼, 직업 등 의 이유로 부모가 아 닌 자와 거주하는 경 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 상 양육하는 보호자 로 하다.
- ④ (생략)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 내) 동장은 출생신고 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자에게 안내하여야

- 아 출생일 기준 6개 월 미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전입일 지 시에 거주하였을 부터 6개월이 경과하 면 지원대상이 된다.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내) ----- 내) (개정안과 같음) 제1호서식---------- 첨부 청서 및 구비서류를 | 서류-----

- ①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 ② 신생아의 부모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 시에 6개월 미만 거 고 부 또는 모가 신생 고 신생아 출생일 기 준 6개월 미만 주민 등록을 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전입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하 면 지원대상이 된다.
 - (3) -----사망, 이혼 등 ---------- 조부모 또 는 친인척 등과 ----
 - ④ (현행과 같음)

하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 제6조(지원신청) ① -- 제6조(지원신청) (1)워대상자는 출산일부 (개정안과 같음) 터 1년 이내에 주소 지관할 동장에게 별 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 [임신· 서 또는 「임신·출 출산 관련 서비스 통 산 관련 급부 통합처 합처리에 관한 규 리에 관한 규정」에 정」----- 별지 제2 따른 별지 제1호서식 호서식인 출산서비스 인 출산 "급부" 통 합처리 신청서를 제 ----- <단서 삭 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제4조제2항의 경우에 는 출산일부터 6개월 이 경과된 때부터 신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② 제1항에 따른 출 ② (개정안과 같음) 의한 장려금 지원 신 산장려금 지원 신청 청시 구비서류는 다 시 첨부서류-----음 각 호와 같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절차) ① (생 제7조(지원절차) ① (현 제7조(지원절차) ① (현 략) 행과 같음) 행과 같음) ② 동장은 제1항의 (<u>2</u>) -----② (개정안과 같음)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u>다음</u>	
접수일 기준 <u>다음달</u>	달	
5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보건소	<u>제출하여야</u>	
장에게 <u>제출 하여야</u>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	3	③ (개정안과 같음)
에 따라 동장으로부		
터 받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확		
인한 후 지원대상자		
에 대하여 매월 20일		
까지 출산장려금을	문자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메시지	
전화, <u>문자메세지</u> 등		
을 통하여 신청자에		
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대장) 보건소장은	제8조(대장)	제8조(대장) (개정안과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u>별</u>	
경우 별지 제2호 서	<u>지 제2호서식</u>	
<u>식</u> 에 의거 출산장려		
금 지원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		

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개정
지원대상이 아닌 사		안과 같음)	
람이 <u>허위</u> 등으로 출	<u> 거짓</u>		
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